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643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평택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길복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재근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7. 체결된 매매계약은 99,902,7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90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9. 7. 10. 2019가단5446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에 관한 공시송달 판결로서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6.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7. 9. 7.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255,0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근저당권채무의 인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7. 9. 설정 등기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2015. 5. 27. 설정 등기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는 2017. 9. 26. 1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4,847,331원을 인수하고, 2017. 9. 28.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17. 10. 16. 2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0,249,963원을 인수하고, 2017. 10. 16.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와 C의 관계 및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이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255,000,000원에서 각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155,097,294원(34,847,331원 + 120,249,963원)을 공제한 잔액인 99,902,7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단위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90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 표시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지붕 제12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74.5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대 36566.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36566.1분의 44.57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4465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피고 D는 2009. 2. 2.부터 2015. 7. 25.까지 안성시 H에 있는 원고 회사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국내외영업 등 회사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 C는 2012. 5. 12.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2.경부터 평택시 I,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원고 회사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화강암 등의 절단, 연마, 천공하는데 필요한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가. 피고들의 기술로 수취 관련

(1)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 D는 재직 중 업무상 위촉한 사업 및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재직 중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D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원고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 기술,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 기계의 운용, 유지 보수 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취득한 것을 기회로, 2015. 1. 23.경 시흥시 L소재 주식회사 M(이하 M)과 한다 :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무실에서 M 대표 N과 원고 회사 물래 M에 기술을 전수해 주고 공역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 설계 및 제어 기술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2015. 9. 3.경 피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4,000만 원을, 2016. 1. 21. 피고 D 명의의 P은영 계좌(계좌번호 : Q)로 4,900만 원을, 2016. 5. 2. 피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3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3회에 걸쳐 기술료 명목으로 합계 1억240만 원 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 D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억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1억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2) 피고 C는 피고 D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물래 M에 원고 회사와 관련된 기술 내지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기술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8. 하순경 M에서 피고 D에게 기술료 송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하자 다치 K이 M에 다이아몬드 공구를 공급한 것처럼 2015. 8. 28.경 K명의로 공급가액 4,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13.경 K명의로 공급가액 5,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 D의 업무상 배임을 방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원고 회사에 1억 2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다이아몬드 공구 납품 관련

(1) 피고들은 2014. 7. 12.경 피고 C 이 원고 회사와 동종, 유사 제품을 수입, 판매 하는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 D 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제품 수입 방법, 제품 관련 기술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영업을 조력하기로 하고, 피고 C 이 2014. 12. 19.경 평택시 I, J 후에 K 를 설립하자, 피고 D 은 위 K 을 위하여 원고 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잠재적 거래처 담당자와 접촉하여 납품가 협의, 주문서 확인, 발주, 납품 확인 등의 업무,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 통관, 관세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R 에 대한 공구 납품 관련

피고 C 은 2015. 7.경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R 전무 S 에 게 "원고 회사에서 납품하던 다이아몬드공구를 원고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K 에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 D 은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2015. 7.경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R 전무 S 과 접촉하여 K 이 주식회사 R 에 납품할 물건의 납품가 협의, 주문서 확인, 주식회사 R 에 납품할 제품의 발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K 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이 원고 회사와 동일함을 보증함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 2015. 8. 경 주식회사 R 으로부터 공급가 96,377,367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 을 접수받아 2015. 10. 26.경 제품을 납품하고, 2015. 8. 7.경 피고 C 이 개설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미화 8548.6달러(한 화 약96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16.경 같은 계좌로 미화 76937.8달러(한화 약 8,670만 원)를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 2016. 5.경 위 주식회사 R 으로부터 공급가 55,399,637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 받아 2016. 8. 10.경 재 품을 납품하고, 2016. 5. 12. 같은 계좌로 미화 4999.30달러(한화 약550만 원)를 송 금받고, 2016. 8. 24. 같은 계좌로 미화 45032.22달러(한화 약 4,980만 원)를 송금 받아 합계 약 1억 516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 U 에 대한 공구 납품 관련

피고 C 은 2016. 6.경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U 의 사장 V 에게 K 에서 다이아몬드 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 D 은 제 1항의 가.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2016. 6. 하순경 K 이 중국 W 주식회사 에 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U 에 다이아몬드 공구(Saw Blade)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수입 전 물품 검사 및 통고나 검사, U 운영 자 V 에게 K 이 납품한 다이아몬드 제품의 사용 설명 등을 함으로써 피고들 은 공모하여 2016. 7. 8.경 U 에 공급가 15,17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 구 (Saw Blade) 250개를 납품하고, 2016. 9. 1. 피고 C 이 개설한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4,442,636원을 송금받고, 2016. 10. 10. 같은계좌 7,477,8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175,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4) X 에 대한 공구 납품 관련

피고 D 은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2014. 12. 초순경 원고 회 사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X 의 Y 에게 원고 회사 대신 K 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공구를 구매하도록 요청하면서 K 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 이 원고 회사와 동일함을 보증하는 등 K 의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 고, 피고 C 은 피고 D 의 조언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주문서 발행, 물품 대금 입금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 2014. 12.경 X 으로부터 공급가 31,547,31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5. 1. 26.에 제품을 납품하고, 2015. 2. 13. 피고 C 이 개설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미화 29,100달러(한화 약3,100만 원)를 송금받고, ㉔ 2015. 7.경 X 로부터 공급가 85,627,32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5. 8. 17.경 재품을 납품하고 2015. 8. 28. 같은 계좌로 미화 72,930달러(한화 약 8,500만 원)를 송금받고, ㉕ 2016. 6. ~ 7. 초순경 X 로부터 공급가 61,758,547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6. 8. 17. 재품을 납품하고, 2016. 8. 26. 미화 56,400달러(한화 약 6,100만 원)를 송금받아 3회에 걸쳐 약 1억 7,7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 (5)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약 3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 1157,1756 업무상 배임등 사건에서 피고 D 은 징역 2년에, 피고 C 은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445,4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지후 소송진행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취지와 같이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마지막 불법행위시인 2016.8. 24.의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